

예비비 지출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797,544,000원으로서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보전비용외3건 708,500,000원을 지출결정하여
0원을 이월하였으며 500,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나)	지 출 액 (다)	이 월 액 (라)	집행잔액 (마)=(가)-(다)-(라)	처 리 일 자		예비비지출사유
과 목									지 출 결정일자	지 출 일 자	
세항	세세항	목									
합 계				708,500,000	708,000,000	708,000,000	0	500,000			
선거관계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차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보전비용	676,000,000	676,000,000	676,000,000	0	0	2006.7.12	2006.7.19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같은법 제122조의 규정(선거비용 제한액의 공고)에 의해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51조의3에 따라 보전비용을 신청 후보자에게 보전하기 위함
재난안전 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이주및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	사유재산피해재난 지원금	3,000,000	3,000,000	3,000,000	0	0	2006.8.2	2006.8.3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5(재난지원금의 지원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6.7.11~7.20 집중호우로 인한사유재산피해 세대에 대하여 신속한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긴급지원
"	"	"	사유재산피해재난 지원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0	0	2006.8.14	2006.8.16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5(재난지원금의 지원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6.7.25~7.29 집중호우로 인한사유재산피해 세대에 대하여 신속한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긴급지원
"	"	"	사유재산피해재난 지원금	19,500,000	19,000,000	19,000,000	0	500,000	2006.12.29	2006.12.29	2006.12.16~12.17 대설로 인한사유재산피해 세대에 대하여 신속한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긴급지원

※ ㉞ 지출결정일자는 예비비지출 승인일자를 기재

㉞ 지출일자는 편의상 최초지출일자를 기재